



제 424회 국회 (임 시 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910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갱신 시 신체검사 실시 규정 마련	4
2. 조종면허 관련 대행기관등의 변경지정 근거 신설	8
3.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확대·축소 발급 근거 신설	19
4. 조종면허 관련 대행기관등 종사자의 결격사유(성범죄 등) 신설	22
5. 조종면허 관련 대행기관등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신설	27
6. 기상특보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제한기준의 합리화	2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13.

3. 회 부 일 : 2025. 3.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수상레저활동은 고속으로 질주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활용한 활동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를 적절히 조종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도 현행법은 조종면허 발급 요건으로 시험에 합격할 것만을 명시하고 있어 신체기준에 관한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 시험·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양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것만을 요건으로 할 뿐, 그 외 별도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도덕
성을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호우·대설·강풍 등과 관련된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내수
면과 해수면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바, 육상 기후현상에 대한 기상특보로 인하여 해수면에서의 수상
레저활동까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내수면과 해수면에 적용되는
기상특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거나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시험·교육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종사자 결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는 기상특보의 종류를 내수면과 해수면으로
구분하여 명시하는 등 수상레저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신체와 생명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거나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도록 하며,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다.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조종면허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여 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라. 성폭력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교육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신설).

마.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바.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는 기상특보의 종류를 수상레저활동 구역에 따라 내수면에 적용되는 기상특보와 해수면에 적용되는 기상특보로 구분하여 명시함(안 제22조제1호).

Ⅲ. 검토의견

1.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갱신 시 신체검사 실시 규정 마련

개정안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거나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도록 요건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2(조종면허의 신체검사) ① 제5조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제12조에 따라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u>
제8조(면허시험) ①·② (생략)	제8조(면허시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면허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u>해당하는</u> 사람은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 ----- -----<u>해당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불합격한</u>-----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취득 요건으로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교육(일정교육·실습시간 이수) 이수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면허증 갱신에 대하여 갱신기간 만을 규정하고 있어,¹⁾

- 1) 「수상레저안전법」 제8조(면허시험) ①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면허시험은 필기시험·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면허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면허시험의 과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면허시험의 면제)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한다) 과목의 전부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을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해당 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것
 3.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기사 면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를 가진 사람
 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 등에 관한 교육·훈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6. 제1급 조종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제2급 조종면허 실기시험으로 변경하여 응시하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조종면허증의 갱신 등) ①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 갱신 기간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이 군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을 미리 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1. 최초의 면허증 갱신 기간은 면허증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제1호 외의 면허증 갱신 기간은 직전의 면허증 갱신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갱신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조종면허의 효력은 정지된다. 다만,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후 면허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날부터 조종면허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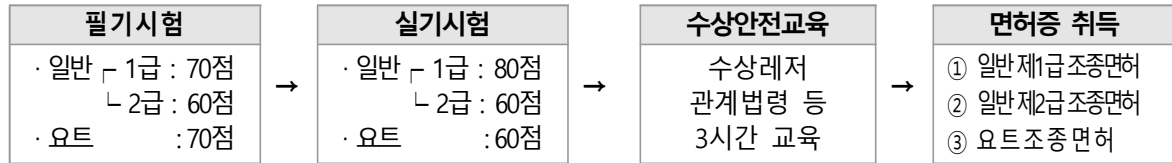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4]

면허시험 과목의 면제 기준(제10조제4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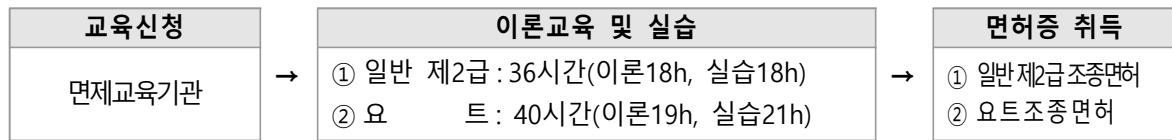
면제 대상자	면제되는 면허시험 과목	
	조종면허의 종류	면허시험 과목
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급 조종면허 및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 과목의 전부
나.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급 조종면허 및 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 과목의 전부
다. 법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급 조종면허	필기시험 과목의 전부
라.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급 조종면허	실기시험 과목의 전부
마.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급 조종면허 및 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과목의 전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절차]

① 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법 제8조)



② 면제교육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법 제9조)



* 자료 : 해양경찰청

조종자의 시력·청력 등 신체적 능력에 대한 별도의 적격기준이나 확인절차는 두고 있지 않음.

[운전관련 면허취득시 신체검사 실시 절차 여부]

구 분	운전면허	해기사	항공조종사	철도면허	조종면허
검사 항목	(공통) 시력·청력 등 신체검사 실시				×
근거 규정	도로교통법	선원법	항공안전법	철도안전법	

* 자료: 해양경찰청

이에 따라 시력·청력 등 인지기능이 저하된 사람도 면허를 취득하거나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어, 수상레저 활동 중 돌발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²⁾

이에 개정안은 신체검사를 통해 조종자로서의 기초적인 신체능력 검증을 제도화함으로써,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2) '24년 인명 피해가 발생한 레저기구 사고 51건 중 “레저기구가 운항 중이던 선박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고”가 5건이 발생하였음.

다만, 개정안은 신체검사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 검사기관 등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위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시력, 청력과 같은 신체검사 항목 등 중요사항은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그 외의 구체적인 적합 기준, 검사방법 등은 하위법령에서 보완하되 과도한 자격 제한이나, 신체적 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조종면허 관련 대항기관등의 변경지정 근거 신설

개정안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항기관(이하 “대항기관등”이라 함)에 대한 지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정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도록 하며,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안 제13조 및 제14조, 안 제18조, 안 제18조의2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9조(면허시험의 면제)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한다) 과목의 전부를 면제한다.	제9조(면허시험의 면제) ①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u>	5. <u>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u> ----- <u>단체</u> -----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③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내용을 운영하여야 하고, 인적·장비·시설 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 내용 운영과 인적·장비·시설 등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면허시험 면제자에 대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⑤ 면허시험-----

제10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9조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를 위한 교육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 교육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운영할 것

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위한 인

<신 설>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생략)

3.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신 설>

<신 설>

적·장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

-----.

1. -----
-----지정 또는 변경지정-----

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1호-----

4. 제1항제2호-----

5.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을 운영한 경우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

<신 설>

<신 설>

②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수상안전교육) ① (생략)

②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인적·장비·시설 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등) <신 설>

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한 경우

7.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의 개선이나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지정 방법·절차와 지정·변경지정, 지정취소-----

-----.

제13조(수상안전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단체-----
-----.

<삭 제>

제14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

<신 설>

①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 위탁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생략)

3.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신 설>

은 제13조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에 필요한 인적·장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

-----.

1. -----
-----지정 또는 변경지정-----

2. (현행과 같음)

3. 제1항-----

4.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

운영한 경우

5.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한 경우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의 개선이나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지정 방법·절차와 지정·변경지정, 지정취소-----

-----.

제18조(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① -----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단체-----
-----.

<삭 제>

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시험대행기관의 장, 책임운영자 또는 종사자가 면허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지시 또는 묵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면허시험 대행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대행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정지 절차,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제4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대행-----

-----.

제18조의2(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8조에 따른 면허시험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장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이나 단체를 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대행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시험대행기관의 장, 책임운영자 또는 종사자가 면허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지시 또는 묵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대행기관을 운영한 경우

5.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u>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한 경우</u> 6. <u>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u> 7. <u>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의 개선이나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u> 8. <u>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면허시험 대행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u> ④ <u>그 밖에 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방법·절차와 지정·변경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56조(과징금)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그 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제56조(과징금) ① ----- ----- ----- ----- ----- ----- ----- ----- -----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u>제10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u>	1. ----- <u>제10조 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u>
2. 안전교육 위탁기관: <u>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u>	2. ----- <u>제14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u>
3. 시험대행기관: <u>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u>	3. ----- <u>제18조의2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대행기관등에 대하여 지정 요건 및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 이후 운영 중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전적 감독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대행기관등이 지정 당시의 요건과 실질적으로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행정청으로서의 사후적으로 취소 등의 처분을 하기 전까지는 적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일부 대행기관등에서 인적기준, 시설기준 등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하거나, 면허시험의 절차 및 결과 처리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어 국민 신뢰 저하와 함께 교육 수강생 및 시험 응시자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 같은 운영상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행기관등이 지정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변경지정을 받도록 하고,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기관을 운영한 경우에는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특히 대행기관등은 수상레저 관련 시험 및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기관의 명칭·시설·인력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 품질 및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은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유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정부가 하위법령 마련 시에 경미한 사항까지 변경지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민간 운영기관의 행정적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는 바, 변경지정 대상 사항은 기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안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이미 대행기관등으로 지정 받아 운영 중인 기관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사후적으로 이러한 기관들은 위법상태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에 대하여 법 시행 이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해당기간 내에 변경지정 신고를 마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경과조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확대·축소 발급 근거 신설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범위의 조종면허를 추가로 취득하거나, 기존 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조종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안 제15조제2항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5조(조종면허) ① (생 략) ② 조종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2. (생 략) ③ . ④ (생 략)	제5조(조종면허) ① (현행과 같음) ② ----- <u>범</u> <u>위를 구분한다.</u> 1.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면허증 발급) ① (생 략) <u><신 설></u>	제15조(면허증 발급) ① (현행과 같음) <u>②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범위의 조종면허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조종면허의 범위를 확대(기존에 받은 조종면허의 범위를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7조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어 조종면허의 범위를 축소(기존에 받은 조종면허의 범위에서 일부 범위를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조종면허의 범위를 축소하여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u>

②·③ (생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 ----- -----.

현행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종류를 제1급, 제2급, 요트 조종면허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³⁾ 기존 면허소지자가 추가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자격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 면허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행정처리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자동차운전면허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1종 대형, 보통, 소형, 특수면허 등 다양한 유형의 면허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합하여 발급하고, 자격 범위의 확대·축소를 하나의 면허증에 반영함으로써 면허제도를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음.⁴⁾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종면허 제도의 통합적 관

- 3) **제5조(조종면허)** 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② 조종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조종면허 : 제1급 조종면허, 제2급 조종면허
 2. 요트조종면허
- ③ 일반조종면허의 경우 제2급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급 조종면허를 받은 때에는 제2급 조종면허의 효력은 상실된다.
- ④ 조종면허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도로교통법**」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③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범위의 운전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기존에 받은 운전면허의 범위를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축소(기존에 받은 운전면허의 범위에서 일부 범위를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축소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리를 통해 수요자의 편의를 높이며, 행정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확대·축소 발급 과정에서 기존의 면허에 부과된 취소·정지 처분의 효력 승계 및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⁵⁾

[최근 5년간 다른 2개의 범위 면허를 취득한 자의 수]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일반 1급 + 요트	일반 2급 + 요트
‘24년	927	507	420
‘23년	934	526	408
‘22년	1,097	576	521
‘21년	1,067	564	503
‘20년	945	469	476
총 계	4,970	2,642	2,328

* 자료 : 해양경찰청

5) 「도로교통법」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⑤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도 제93조에 따라 받게 되거나 받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효력과 벌점은 그대로 승계된다.

4. 조종면허 관련 대행기관등 종사자의 결격사유(성범죄 등) 신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에 따른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인 자는 시험·교육 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종사자 교육) <u><신 설></u>	제19조(종사자의 결격사유 및 교육)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면허 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교육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u> 1. 「 <u>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u>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 <u>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 <u>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u> 」 제5조의12에 따른 죄

① (생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 ----- <u>사항과 종사자의 준수사항</u> -----.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4조(과태료) ① ----- ----- -----.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1. 제19조제2항----- -----
2. ~ 11. (생략)	2.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수상레저기구를 안전하게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조종면허와 관련하여 면허시험의 시행, 시험대행기관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시험 또는 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결격사유, 특히 도덕성과 공공성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에 따른 범죄(이하 “특정범죄”라 함)⁶⁾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조종면허 시험 감독, 실기 교육, 강의 등 수험생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및 교육 수강자와의 직접적 접촉이 수반되는 업무에 관여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불안을 초래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제도 보완 요구가 제기되어 왔음.⁷⁾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상레저 조종면허의 시험 및 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정범죄 등 중대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으로,

수상레저 안전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수강자의 권익 보호 및 교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특히, 수상레저 조종면허는 만 14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며,⁸⁾ 청소년 수강자의 참여가 허용되어 있는바, 면허시험과 교육 과정에서의 대인 접촉 특성 및 수강자의 연령 구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업무 참여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규제로 볼 수 있음.

한편, 본 조항이 적용 대상 범죄를 성범죄 등 특정 범죄군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점은 다른 강력범죄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예컨대, 살인, 방화 등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중범죄 전력자에 대해서는

7) ('23. 5월경)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 강사가 성범죄자 경력자이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에서 근무중이라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8) 제7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4세 미만(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사람.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별도의 제한이 없으면서 성폭력범죄 등의 전력자에 대해서만 시험·교육 업무 종사를 제한하는 것은 규제 대상 설정의 합리성과 균형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제기될 수 있으나, 유사입법례인 「도로교통법」 등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는 수상레저관련 시험·교육 업무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2항(위험운전 등 치사상)⁹⁾을 결격사유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유사 직역 입법례 비교]

구분	「도로교통법」	「청소년 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근거 규정	교통안전교육강사(제76조③)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제106조④) 결격사유	청소년지도사(제21조④), 청소년상담사(제22조②)의 결격사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제11조의5)
적용 대상	○교통안전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에 배치되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결격 사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① 성폭력범죄 ②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③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 범죄 ④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죄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① 성폭력범죄 ②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③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① 성폭력범죄 ②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안 제19조제1항중 ‘시험·교육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제한의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강사나 평가자 외에 단순 보조인력이나 행정지원 인력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시험·교육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또한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조종면허 관련 대항기관등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신설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이하 “대항기관등”이라 함)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보고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해당 기관에 출입·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2(지도 및 감독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설·장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장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시설·장비 및 기관의 운영 개선과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험·교육기관에 출입·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대항기관등의 지정 요건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¹⁰⁾은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 이후 해당 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명시적인 지도·감독 권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대항기관등은 조종면허 시험과 교육 등 수상레저 안전관리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기관 운영의 적정성은 국민의 생명·신체와 직결되는 사안임.

따라서 해양경찰청장에게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보고 요구, 현장 출입 및 검사 권한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은 위탁제도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10) 제10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시험대항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 기상특보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제한기준의 합리화

개정안은 수상레저활동의 제한 사유가 되는 기상특보의 종류를 수상레저활동의 구역에 따라 내수면과 해수면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기상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호).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 누구든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 ----- ----- ----- ----- ----- ----- -----.
1. <u>태풍·풍랑·폭풍해일·호우·대설·강풍과 관련된 주의보</u>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1. <u>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u> ----- -----
<u><신 설></u>	<u>가.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활동:</u> <u>태풍·풍랑·폭풍해일·호우·대설·강풍</u>
<u><신 설></u>	<u>나. 해수면에서의 수상레저활동:</u> <u>태풍·풍랑·폭풍해일</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태풍, 풍랑, 폭풍해일, 강풍, 호우, 대설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내수면과 해수면 구분 없이 수상레저활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내수면과 해수면의 기상 조건과 다른 경우 현장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참고로, 2023년 2월 「기상법」 개정¹¹⁾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해양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해양기상특보(태풍, 풍랑, 폭풍해일)¹¹⁾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유선 및 도선사업법」도 2023년 2월에 개정¹²⁾되어 해양기상특보 발효 시 해수면 운항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태풍, 풍랑, 폭풍해일, 호우, 대설, 강풍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일률적으로 모든 수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고

11) 「기상법」 제14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① 기상청장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시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보(이하 “해양기상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풍속, 파고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해양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해양기상특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가 예상되고 재해에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기상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이하 “해양기상예비특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종류·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상법」 시행령 제9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이하 “해양기상특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해양기상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1. 태풍
2. 풍랑
3. 폭풍해일

1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8조(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④ 유·도선은 기상특보(「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발효 시 운항할 수 없다.

있는 점을 개선하여, 기상특보의 적용 대상을 내수면과 해수면으로 구분함으로써 보다 실정에 부합하는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내수면과 해수면 경계 지역에서는 호우나 강풍특보가 발표될 경우 인근 해수면 위까지 영향이 있는 만큼 경계지역 안전을 위해 호우특보와 강풍특보도 함께 고려할 필요하다는 기상청의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은 내수면 기상특보인 호우와 강풍을 수상레저활동자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나, 유선 및 도선과 달리 소규모의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는 수상레저활동자는 연안 및 해안의 호우·강풍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이 수용되는 경우, 안 제22조제1호가목 중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활동 제한 사유로 포함되어 있는 풍랑특보는 「기상법」시행령상 해상(해수면)에만 적용되는 해양기상특보로, 파고(물결의 높이)를 기준으로 발효되어 내수면(하천, 호수, 저수지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특보이므로, 내수면의 기상특보 기준에서는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음.

[적용 구역에 따른 기상특보 구분]

기상특보	적용 구역	비 고
태 풍	육상+해상	전국단위, 광범위 영향
<u>풍 랑</u>	<u>해상</u>	<u>바다의 파도/바람에 관한 특보</u>
폭풍해일	해상(육상해안 포함)	해안 지역 포함, 해수면 상승 위험
호 우	육상	집중 호우 시 적용
대 설	육상	산간/내륙 중심, 눈피해 대비
강 풍	육상+해상	바람 기준이 육지/바다 상이

* 자료 : 해양경찰청

한편, 현행법 제31조¹³⁾는 사고의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 해양경찰서장 등이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상특보에 따른 규제 완화로 국민 안전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25

13) 제31조(시정명령)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에 대한 시정명령은 사고의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수상레저기구의 탑승(수상레저기구에 의하여 밀리거나 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원의 제한 또는 조종자의 교체
2.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
3. 수상레저기구의 개선 및 교체

참고1

조종면허 대행기관(시험, 안전교육, 면제교육) 비교

구분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조종면허 면제교육기관
근거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수상안전교육)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면허시험의 면제)
개소	전국 32개소 조종면허시험장	전국 33개소 수상안전교육장	전국 46개소 면제교육기관
대상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실기시험 실시	① 최초 조종면허 취득자 - 면허시험(필기·실기) 합격한 사람에 대해 수상안전교육 이수 후 면허증 발급 ② 조종면허 갱신 대상자 - 조종면허 취득자는 매 7년마다 수상안전교육 이수 후 면허증 갱신	면허시험(필기·실기) 대신 일정 시간 이론학습과 실습 등을 통해 면허취득을 희망하는 자
방법	실제 모터보트(요트)를 정해진 운항코스 에 따라 조종하면서 변침, 정지·후진, 인명구조 접안 등 조종 항목별 채점 기준에 의해 시험 집행	수상레저활동에 필요한 관계법령 및 레저기구 사용·관리, 수상상식, 수상구조 관련 이론교육 실시	① 일반 2급 : 36시간 교육실습 (조종술, 모터보트 개요, 관계 법령, 수상 상식, 응급처치 등) ② 요 트: 40시간 교육실습 (범주법, 요트개요, 관계 법령, 수상 상식, 응급처치 등)
합격 (이수) 기준	① 일반 1급 80점이상 ② 일반 2급 60점이상 ③ 요 트 60점이상	① 최초 면허 취득자 : 3시간 ② 면허 갱신 대상자 : 2시간	면허별 정해진 이론·실습 시간 이수
면허 발급	① 일반 1급 조종면허 ② 일반 2급 조종면허 ③ 요트 조종면허	면허 갱신을 희망하는 ① 일반 1급 조종면허 ② 일반 2급 조종면허 ③ 요트 조종면허	① 일반 2급 조종면허 ② 요트 조종면허
수수료	실기시험 응시료 64,800원	수상안전 교육비 14,400원	-

* 자료 : 해양경찰청